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6. 16 선고 2016가단503979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망 B의 소송수계인

1. C

2. D

3. E

변론 종결2017. 4. 21.

판결 선고2017. 6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F과 망 B 사이의 2010. 7. 29.자 매매예약 및 2011. 9. 30.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. 피고 C, D, E은 F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. 3. 24. 접수 제12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1. 10. 7. 접수 제436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F은 1998년경부터 2008. 10. 14.까지 원고의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, 원고의 자금을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인출·소비하여 횡령한 범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, 제1심(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163)은 2010. 7. 9. 징역 2년, 집행유예 3년, 80시간의 사회봉사의 형을 선고하였고, 항소심(서울고등법원 2010노2071)은 2010. 12. 3.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원고는 2011. 5. 6. F을 상대로 위 업무상횡령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제1심(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5335)은 2011. 10. 7. "F은 원고에게 151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1. 4. 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"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항소심(서울고등법원 2011나87039)은 2012. 3. 22.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 한편 원고가 F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(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확2309)에서 2012. 7. 3. F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송비용이 12,035,230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고,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다. 그 후 원고는 채권자가 원고, 채무자가 F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6. 7.자 2012타채16872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. 6. 18.자 2012타채211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2. 7. 16.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16,184,611원,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4,321,556원 등 합계 30,506,167원을 영수하여, 그 중 12,035,230원을 위 소송비용의 변제에, 9,774,860원을 위 판결금에 대한 2011. 4. 2.부터 2012. 7. 16.까지의 지연손해금의 변제에, 나머지 8,696,077원을 위 판결금 원금의 변제에 각 충당하였다.

라. 그 뒤 원고는 2017. 3. 21. 이루어진 F의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포상금채권(126,125,000원)에 관한 배당절차(서울동부지방법원 G)에서 87,222,591원을 배당받았고, 위 배당 당시 원고의 F에 대한 피보전채권 액수는 원금이 142,803,923원이고 지연손해금이 33,412,204원이었는데, 위 배당으로 지연손해금 33,412,204원 및 원금 중 53,810,387원(= 87,222591원

-33,412,204원)이 변제되었다. 이로써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88,993,536원(= 142,803,923원 - 53,810,387원) 및 이에 대한 2017. 3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되었다.

마.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통칭한다)에 관하여 2010. 8. 3. 전소유자인 H으로부터 2010. 6. 1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1. 3. 24. 부친인 B에게 2010. 7. 29.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, ② 2011. 10. 7. B에게 2011. 9. 30.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.

바. B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. 4. 8.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(F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포함. 이하 같다)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

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시점은 모두 F이 원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행위 등을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F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(2011. 5. 6.)하기 직전이거나 위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일(2011. 10. 7.)이다. 여기에 B이 F의 부친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, F은 원고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B에게 소유권이전 행위를 하였고, 수익자인 B 역시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. 따라서 B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사해행위로 이전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

이 사건 부동산은 B이 F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으로서 채무자인 F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다시 B에게 이전하였다고 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.

3. 판단

가.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,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,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(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).

나. 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B은 2010. 4. 19.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30,000,000원, 계약금 50,000,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, 2010. 6. 1. 200,000,000원을, 2010. 7. 29. 80,000,000원을 각 H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, B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H과 사이에 2010. 6. 15.자로 F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,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. 8. 3. 위 2010. 6. 1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, 한편 B은 명의수탁자인 F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호하려는 등의 의도로 2010. 7. 29.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여 둔 다음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1. 3. 24.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, 그 뒤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. 9. 30.자로 F과 사이에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1. 10. 7.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H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F에게 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채무자인 F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F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(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해행위취소권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그 제척기간

또한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,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).

원고는, B이 향후 F이 부담하게 될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F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위에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판사고종영

별지